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43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이광희 · 박해철 · 이수진
임미애 · 김남근 · 김문수
이연희 · 양부남 · 박정현
송재봉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

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사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신분확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청소년증”을 “청소년증(모바일 청소년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을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과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청소년증(이하 “청소년증등”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를 “청소년증등 외에 청소년증등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증등의 발급 및 청소년증등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이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20호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청소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등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등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
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등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사람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제4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2항까
지의”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 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 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 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u>청소년증</u> 등 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 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청소년증(모바일 청 소년증을 포함한다)----- ----- -----.
④ (생 략) 제4조(청소년증) ① (생 략) <u><신 설></u>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청소년증) ① (현행과 같 음) ② <u>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이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 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2 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청 소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u>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과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청소년증(이하 “청소년증등”이라 한다)은-----

④ -----청소년증등 외에 청소년증등과-----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등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증등

가속부령으로 정한다.	<u>의 발급 및 청소년증등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u> -----.
제43조(벌칙) ① . ② (생략)	제43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신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등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신설>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등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사람
<신설>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1. 2. (생략)	4. 5.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45조(과태료) ① . ②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 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 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 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 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삭 제> ④ -----제2항까지의----- ----- ----- ----- ----- -.
--	---